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19년 6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장애인·노인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돌봄로봇 개발에 머리를 맞대다

- 국립재활원, “돌봄로봇 심포지엄 - 돌봄의 어려움” 개최 (6.3) -

-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돌봄 현장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 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돌봄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6월 3일(월) 13시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자립 지원 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형(모델) 개발사업」(19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립재활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단장 이범석)에서는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돌봄부담 경감*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당사자 및 돌봄을 주는 자를 위한 수요파악, 서비스 모델 개발, 중개연구, 인력·제도 연계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 돌봄 주는 사람의 신체 및 심리적 부담 감소, 돌봄시간 단축, 업무의 효과 제고 등으로 돌봄부담 경감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장애인 및 거

동불편 노인 당사자와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돌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할 계획이다.

-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권지담 한겨레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 달간 실제로 직접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획기사를 토대로 본 돌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을 주는 사람의 돌봄 이야기’로 정영만 서울다누림관광센터장과 이정옥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장이 발표한다.
- 세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거동불편 노인 당사자와 돌봄을 주는 사람의 돌봄 이야기’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와 김영식 유당마을 원장이 발표한다.

■ 국립재활원에서는 그동안 재활로봇 개발 및 인허가 취득 등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고 의료재활 로봇보급사업을 통해 병원, 복지관에 상·하지 재활로봇** 등을 120여 대 보급하였다.

* 보행보조용 착용형 외골격로봇 Angelegs, 하지재활로봇 EXOWALK, 유연한 착용형 손로봇 Exo-glove poly 등 개발 및 인허가 취득

** 상·하지 재활로봇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이 있는 환자, 장애인, 노인의 기능회복과 신체보조를 위해 활용

- 축적된 재활로봇 개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0년도부터 돌봄로봇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기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 현재 국산화율 28.6%로 머물러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장식물(액세서리) 등의 전략품목 보조기기와 희소성 있는 정책품목 보조기기의 국산화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공공복지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돌봄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돌봄로봇 심포지엄이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주는 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돌봄·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돌봄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5378,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술연구과, 2019.6.3.

II

노인학대 예방 위해 보건복지부 - 편의점 업계 손잡대

- 보건복지부 -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5개 회원사(GS25, CU, 7-ELEVEN, MINISTOP, C-SPACE), 노인학대 예방 홍보활동 ‘나비새김’ 업무협약 체결 (6.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조운성) 및 5개 회원사인 GS25(대표 조운성), CU(대표 박재구), 7-ELEVEN(대표 정승인), MINISTOP(대표 심관섭), C-SPACE(대표 이은용)와 노인학대예방 홍보(캠페인) ‘나비새김*’에 동참하는 업무협약을 6월 4일(화) 15시 30분 코리어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나비)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

- 이번 업무협약으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매장 전용기기(포스 단말기)를 활용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인학대의 발견은 이웃들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편의점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윤성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 또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나비새김’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편,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회원사는 6월 8일(토) 세종문화회관 세종뜨락 및 중앙계단에서 진행될 「제1회 나비새김 캠페인」 행사에서 음료수를 지원한다.

○ 아울러, 편의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꾸준히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홍보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간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이미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편의점 포스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

※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부터 연중 4만여 점포에 송출 예정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538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2019.6.3.

Ⅲ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 2019년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6.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5.23 보도자료 배포)」

-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 예정

-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계획(안)

① 개최 목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재정립,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각적 의견 수렴 및 합의 방향 모색
- 구체적 사례의 심층 분석·토론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에 반영

② 논의 내용 및 일정

-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 위주로 선정

〈'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주제(안)〉

차수	주제	일정(잡정)
1차	부모의 '징계권' vs. 아이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6월 5일
2차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7월 2주
3차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원칙인가? 예외인가?	8월 4주
4차	말하지 않는 아이, 아이들은 언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하는가?	9월 4주
5차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11월 16일
6차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환경조성	12월 3주

* 포럼 주제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포럼 구성

- 선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제 및 주제와 연관된 아동학대 실제사례 심층분석·발표
-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자유로운 토론 실시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5394,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대응과, 2019.6.5.

IV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 확대

-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 (기준)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

-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 (기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
(개선)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

- 소음 환경 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 (기준) 보청기 착용 및 청력 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 진단 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 인정
(개선)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 인정

-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17년~'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 이에 따라 '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추진 경과〉

□ ('17년 52개 항목 검토, 38개 항목 개선) 인큐베이터, 고막 절제술 등 급여 확대, 기존 횡수를 초과 사용한 장기이식 약물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 ('18년 122개 항목 검토, 50개 항목 개선)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확대,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

○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 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위)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치료재료)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

○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

○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5409,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2019.6.13.

V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지켜주세요

-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6.14) 및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반쪽날개를 이어주세요, 어르신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를 표어(슬로건)로 진행

○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였고,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를 위한 100여 건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대통령표창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권교육, 독거노인 주택제공 등의 공로로 전북 남원시청의 김순복 노인복지팀장과 학대피해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각각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표창은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초도노인요양원 김동완 원장과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수정 부장, 경기도 양주시청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수상하였다.

○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또한, 배우 이시영씨를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위촉하게 되었다.

○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노인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8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학대 신고건수	1만1905건 (12.6%)	1만2009건 (0.9%)	1만3309건 (10.8%)	1만5482건 (16.3%)
학대판정 건수	3,818건 (8.1%)	4,280건 (12.1%)	4,622건 (8.0%)	5,188건 (12.2%)

- 또한, 가정내 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사례 중 89%가 가정내 학대이고, 그 외 생활시설(7.3%), 병원(1.3%) 등에서 발생

** 노인학대사례 중 9.4%가 재학대 사례로, 전년대비 1.6%p 증가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홍보활동 강화)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 중앙신고의무 자협의체(20개 단체, 140여 만 명)를 중심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기반 확충)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 ('17) 30개소 → ('19) 34개소(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학대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 수행)

-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을 파견,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을 비롯한 행위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인권교육)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18년부터 인권교육 의무화(연간 4시간), 교육실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정

■ 보건복지부는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한다.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의 표준권고안 마련, 노인보호기관에서 자기방임 노인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신고의무자 직군(17개)의 지속적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별첨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전체 노인학대 증가('17년 4,622건 → '18년 5,188건, 12.2% 증가)
 - * 가정 내 학대 증가('17년 4,129건 → '18년 4,616건, 11.8% 증가)
- 자기방임은 감소('17년 291건 → '18년 240건, 17.5% 감소)

■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만5482건이고,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신고대비 33.5%)으로 나타났다.
 - 신고 및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16.3%, 학대건수는 12.2% 증가하였다.
 -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9.4%로 전년(7.8%)대비 1.6%p 증가하였다.
-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재학대 사례 또한 그 특성상 가정내에서 발생(98.4%)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징적으로, 자기방임*은 최근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14년(8.0%) → '15년(10.1%) → '16년(7.7%) → '17년(4.0%) → '18년(2.9%)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노인부부가구가 증가추이*를 보인다.

* '14년(701건) → '15년(808건) → '16년(1,023건) → '17년(1,216건) → '18년(1,512건)

-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노인 학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

- 노인학대 신고건수: 1만5482건
- 신고건수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 5,188건(전체 신고의 33.5%)
 - 학대피해노인: 남 1,353명(26.1%), 여 3,835명(73.9%)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767건(학대판정사례 신고의 14.8%)

2)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노인학대 행위자 : 총 5,665명, 남 4,008명(70.8%), 여 1,657명(29.2%)
 - 관계: 아들 2,106건(37.2%), 배우자 1,557건(27.5%), 기관*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
 - *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을 포함
 - 연령: 70세 이상 1,701건(30.0%), 50~59세 1,414건(25.0%), 40~49세 1,253건(22.1%), 60~69세 824건(14.5%), 30~39세 318건(5.6%) 등

3) 노인학대 재학대 현황

○ 재학대 신고건수: 488건(전체 학대사례 5,188건의 9.4%)

- 남 102명(20.9%), 여 386명(79.1%)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

○ 재학대 신고자: 신고의무자 38건(7.8%), 비신고의무자 450건(92.2%)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500명, 학대피해노인과 동거 413명(82.6%)

- 동거유형: 아들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

○ 재학대 학대유형: 정서 394건(49.6%), 신체 316건(39.8%), 방임 37건(4.7%), 경제 28건(3.5%), 자기방임 13건(1.6%) 등

4)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건)	비율(%)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046	37.3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508	42.9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228	2.8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381	4.7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718	8.8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240	2.9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5	0.7
합 계		8,176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는 차이가 있음

5) 노인학대 발생장소

○ 가정 4,616건(89.0%),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

○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 가정 내 학대 : 정서(45.7%), 신체(38.7%), 방임(6.1%), 경제(4.9%), 자기방임(3.1%), 성(1.0%), 유기(0.6%)
- 생활시설 학대 : 방임(43.5%), 성(27.9%), 신체적(20.7%), 정서(6.8%), 경제(1.0%)

〈 학대발생 장소에 따른 학대 유형 〉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가정 내	2,869	3,387	71	367	450	231	46	7,421
	38.7	45.7	1.0	4.9	6.1	3.1	0.6	100
생활 시설	101	33	136	5	212	-	-	487
	20.7	6.8	27.9	1.0	43.5	-	-	100
이용 시설	6	8	2	1	30	-	-	47
	12.8	17.0	4.3	2.1	63.8	-	-	100
병원	37	31	17	-	13	-	1	99
	37.4	31.3	17.2	-	13.1	-	1.0	100
공공 장소	17	29	2	2	3	4	2	59
	28.8	49.2	3.4	3.4	5.1	6.8	3.4	100
기타	16	20	-	6	10	5	6	63
	25.4	31.7	-	9.5	15.9	7.9	9.5	100
합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37.3	42.9	2.8	4.7	8.8	2.9	0.7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는 차이가 있음

6) 독거(노인단독 가구) 학대피해노인 현황

○ 독거 학대피해노인 : 999건(19.3%)

- 남 322명(32.2%), 여 677명(67.8%)

- 신고자: 신고의무자* 295건(29.5%), 비신고의무자** 704건(70.5%)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8건(20.8%),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8건(3.8%)
 - ** 경찰 등 관련기관 462건(46.2%), 학대피해노인 본인 106건(10.6%)
- 독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 1,100명
 - 아들 405건(36.8%), 딸 175건(15.9%), 기관 111건(10.1%) 등
- 독거 학대피해노인 학대 유형
 - 정서 428건(31.3%), 방임 313건(22.9%), 신체 272건(19.9%), 자기방임 187건(13.7%), 경제 115건(8.4%), 유기 28건(2.0%), 성 24건(1.8%) 등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 치매* 학대피해노인: 1,207건(23.3%)
 - * 치매의심 507건(42.0%), 치매진단 700건(58.0%)
 - 남 323명(26.8%), 여 884명(73.2%)
- 치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 1,575명(27.8%)
 - 기관 631건(40.1%), 아들 422건(26.8%), 배우자 141건(9.0%) 등
- 치매 학대피해노인 학대 유형
 - 방임 449건(26.5%), 신체 448건(26.4%), 정서 445건(26.2%), 성 122건(7.2%), 자기방임 112건(6.6%), 경제 80건(4.7%), 유기 41건(2.4%) 등

8) 노(老)-노(老) 학대 현황

- 노노학대: 2,051건(전체 학대 행위자의 36.2%)
 - * 노노학대: 65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 신고자: 신고의무자* 297건(14.5%), 비신고의무자** 1,754건(85.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4건(5.6%),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02건(5.0%) 등

** 경찰 등 관련기관 1,375건(67.0%), 학대피해노인 본인 163건(7.9%), 친족 157건(7.7%)

○ 노노학대 행위자: 2,051명

- 배우자 1,474건(71.9%),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536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6.14..